<서식>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영천고등학교 모듈러 기숙사 제작·설치

나. 추정금액 : 금14,781,525,000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31. 까지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이사업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에 따라 전일제생활학교 운영을 위한 기숙사 증축 사업임

○ 2027학년도 기숙사 안정적인 학생 수용을 위해 2027. 3. 1. 이전 사업완료가 필수적이며, 지연시 교육과정 운영 차질 및 상당한 민원이 예상됨.

○ 이에 조속한 진행 및 긴급 입찰이 필요함.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